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5톤 미만 선박 음주 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 강화>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13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5톤 미만 선박 음주 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 강화 ·	3
2. 부칙	14
IV . 입법의 재정영향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7.
3. 회 부 일 : 2026.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 운항을 위해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에 따른 도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엄정한 법적 규제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적 잣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한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음. 소형선박은 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인식과 달리, 충돌이나 전복 사고 발생시 대형 선박보다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 수준은 다른 선박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벌칙 역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제115조제3호 및 제4호 삭제).

Ⅲ. 검토의견

1. 5톤 미만 선박 음주 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박직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총톤수 5톤 미만 한국선박의 음주 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종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4호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략) <u><신설></u>	제114조(벌칙) ----- ----- ----- -----. 1. ~ 14. (현행과 같음) <u>14의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u>
<u><신설></u>	<u>14의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u>

15. ~ 24. (생략)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5. (생략)	<u>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u> 15. ~ 24. (현행과 같음) 제115조(벌칙)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9조¹⁾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및 도선하는 행위를 금지(제1항)하고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음.

현행법은 ①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²⁾에 따른 선박, 모든 외국

1)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협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도선

4) 수면비행선박

선박 및 시운전선박(이하 “일반선박”이라 함)과 ② 「선박직원법」 예외에 해당하는 총톤수 5톤 미만 한국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함)을 구분하여 전자는 법 제113조에서, 후자는 법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제39조 위반(음주운항 및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 운항 및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 >

조항(적용 대상)	위반 내용	세부 기준	벌칙 수위
제113조3) (일반선박)	음주운항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항 재범 (10년 이내)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15조4) (소형선박)	측정 거부	1회 거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재범 (10년 이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항	수치 세분화 없음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횟수 세분화 없음	500만원 이하 벌금

-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벌칙) 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현행법이 소형선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벌칙을 규정한 사유가 입법 연혁상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들 선박은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킬 의무⁵⁾가 없어 전문자격을 전제로 운항하는 선박과 책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최근 5년('21년~'25년)간 법 제113조,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 단속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해상교통안전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5)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①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③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도선 ④ 수면비행선박이 아닌 선박은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않아도 됨(「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제가목).

<최근 5년간 음주운항 관련 단속 현황>

(단위: 건)

적용 조항	위반 내용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제113조 제1항	음주운항	260	62	54	70	45	29
제113조 제2항	음주운항 재범	21	7	4	4	4	2
제113조 제3항	음주측정 거부	13	3	1	6	2	1
제115조 제3호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	116	22	16	42	25	11
제115조 제4호	5톤 미만 선박 음주측정 거부	5	2	-	2	1	-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

<소형선박 선종별 단속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15조제3호) 소계	116	22	16	42	25	11
(115조제3호) 어선	104	21	15	36	22	10
(115조제3호) 유선	1	-	-	-	-	1
(115조제3호) 기타선	11	1	1	6	3	-
(115조제4호) 소계	5	2	-	2	1	-
(115조제4호) 어선	4	2	-	1	1	-
(115조제4호) 유선	-	-	-	-	-	-
(115조제4호) 기타선	1	-	-	1	-	-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

최근 5년간 제115조에 따른 소형선박의 단속 건수는 매년 제113조에 따른 일반선박의 단속 건수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음주운항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음주측정 거부도 같은 기간 총 5건이 단속되었음.

선종별로 살펴보면, 제115조제3호에 따른 음주운항 총 116건 중 어선이 104건, 제115조제4호에 따른 음주측정 거부 5건 중 어선이 4건으로, 소형선박 음주운항 관련 위반이 대부분 어선에서 발

생하고 있음.

- 국내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규모는 「등록선박통계」와 「등록어선통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선박법」 제8조6)에 따른 등록선박통계에는 같은 법 제26조7)에 따라 어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현황>

(단위: 척, %)

구분	전체 척수	5톤 미만 척수	비율
「선박법」상 등록선박	8,450	1,653	19.6
등록어선	63,731	50,446	79.2

※ 자료: 해양수산통계

※ 시점: (등록선박통계) '24.12. / (등록어선통계) '24년

※ 등록어선의 5톤 미만 척수는 「등록어선통계」상 '0~1톤'부터 '4~5톤'까지의 구간을 합산한 수치임

6)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7) 「선박법」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세일링요트

「선박법」상 등록선박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은 19.6%이나, 등록어선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은 79.2%을 차지함.

위 통계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여객정원 13명 이상 선박, 낚시어선, 해상 유선·도선 등 제113조 적용선박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115조의 정확한 적용대상 척수로 보기는 어려우나,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특히 소형어선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법 제115조 위반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소형선박은 선체 규모가 작아 충돌·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양 인명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벌칙 수준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징역형을 새로 도입하고 벌금 상한을 두 배로 높이는 것으로 제재 수준을 상당히 강

화하는 것이나,

벌칙 수준은 현행법 제113조가 일반선택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항에 규정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하며, 고농도 음주운항, 재범 및 일반선택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현행법 내부의 벌칙체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개정안의 적용대상에는 개인이 소유·운항하는 소형어선 등 생계형·소규모 선택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벌금 상한의 상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법원이 위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위반에는 탄력적인 양형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중대한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 개정안은 법 제113조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는데, 「도로교통법」⁸⁾도 자전거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농도와 횟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8)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운송수단의 규모·위험성 및 운전자격체계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법정형을 두는 입법방식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형선박에 일반선박과 동일한 농도별·횡수별 처벌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농도 음주운항이나 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우려가 있음.

소형선박은 원칙적으로 해기사 승무의무가 없고 개인이 직접운항하는 영세한 소형어선 등이 다수 포함되는 등 일반선박과 운항자격 및 영업행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형선박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및 위반횡수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안전법」과 음주운항 및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수준을 통일하는 내용의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일 의원에 의해 동일 취지로 발의되어 상정 대기 중이며,

세 건의 법률안은 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운항 및 측정 거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타법상의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

소관부처	법명	음주운항 처벌기준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
해양수산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현행)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수산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9)10)	(현행) (톤수 무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11)	(현행) (톤수 무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총톤수 5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현행과 동일	
행정안전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2)	(현행) (톤수 무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총톤수 5톤 미만 유선·도선은 현행과 동일	(현행) 별도 규정 없음 → (개정) 총톤수 5톤 미만 유선·도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양수산부는 상대적으로 처벌기준이 낮은 총톤수 5톤 미만 소형선박의 음주 운항 관련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9)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의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10)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의 위반행위에 적용됨

11)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하위법령의 개정을 요하지는 않으나 벌칙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알릴 수 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 경과조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형벌규정을 강화하는 경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¹³⁾ 및 행위시법주의 원칙¹⁴⁾에 따라 법률의 제정·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하거나 강화한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어 보임.

13)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4)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⁵⁾

문 의 처

02)6788-5427

15)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